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득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98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5.

발 의 자 : 강득구 · 한민수 · 이병진
양문석 · 이용우 · 정일영
소병훈 · 이성윤 · 맹성규
박 정 · 민병덕 · 김상욱
김문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,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.

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4조제2항 등).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·청렴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(이하 “공직윤리청문회”라 한다)과 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·전문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(이하 “공직역량청문회”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
③ 공직역량청문회에서는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6호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.

6.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보고서

제6조제2항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“15일”을 “20일”로, “인사청문회의”를 “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의”로, “3일이내로”를 “각각 3일 이내로”로 한

다.

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인사청문회는”을 “공직역량청문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사청문회 등에 관한 적용례)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·청렴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(이하 “공직윤리청문회”라 한다)과 공직후보자의 직무적합성·전문성 등에 대한 인사청문(이하 “공직역량청문회”라 한다)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</u> ③ <u>공직역량청문회에서 공직윤리청문회의 청문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없다.</u>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② (생략) 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 ①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5조(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제6호는 국회의 동의 또는 인사청문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한정한다.
1. ~ 5.(생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② · ③ (생 략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
(생 략)

②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
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
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
한다.

③ · ④ (생 략)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
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
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
문회를 마치되, 인사청문회의
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. 다만,
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
판관등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
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
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
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
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
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인사
청문회는 공개한다. 다만, 다음

6.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

보고서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
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30일-----

--.

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등) ① -

-----20일-----
-----공직윤리청문회
와 공직역량청문회의-----
각각 3일 이내로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인사청문회의 공개) ① 공
직역량청문회는-----.

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. 1. ~ 5. (생 략) <u><신 설></u>	----- ----- -----. 1. ~ 5. (현행과 같음) <u>② 공직윤리청문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할 수 있다.</u>
---	---